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5
----------	------

발의연월일 : 2020. 7. 2.

발 의 자 : 김경만 · 권인숙 · 양이원영
윤관석 · 조오섭 · 신정훈
이성만 · 김희재 · 허 영
김홍걸 · 박홍근 · 서영석
남인순 · 윤미향 의원
(14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관하여 상품을 납품받아 직접 판매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매장을 임대하면서 상품매출액에 연동하여 임차료등을 수취하는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시장의 급성장에 따라 중소기업들의 온라인 유통에 대한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며, 사이버몰의 경우 다량의 거래를 동시다발적으로 매개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선호 정보와 수요 패턴을 빅데이터 수준으로 집적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전통적 산업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가지는 시장지배력 이상의 힘을 가지고 있어 중소기업인 공급업자 또는 입점사업자는 시장지배적 사이버몰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여 있음.

그러나 온라인시장에서 1천억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는 대다수 상위권 사이버몰 운영자들은 직접판매방식을 취하기보다는 주로 입점사업자와 소비자의 전자상거래를 매개함으로써 수수료와 광고료를 징수하는 통신판매중개자의 지위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어, 그 사업방식이 대규모 오프라인 유통매장에서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대차료 등을 수취하는 임대사업자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이 규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통신판매중개자인 사이버몰 운영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통신판매업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일적으로 규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을 명확히 하여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 중 매출액 1천억원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의제하고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2조의2제2항 신설).

나.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게 상품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상품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대규모유통업자로 하여금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기준과 지급 세부 내역을 납품업자

등에게 알리도록 함(안 제8조).

다.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사거래 우선배
송을 강요하거나 사이버몰 입점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불이익
제공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함(안 제17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이버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 등의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을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또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40일”을 “40일(제4호에 따른 상품판

매대금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40일”을 “40일(제1항제4호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상품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기준과 지급 세부 내역을 납품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제6호 중 “하는”을 “하거나 광고의 방법을 제한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1호(중전의 제10호)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

10.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사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배송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사이버몰에 입점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다.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 또는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

라.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고 이를 달

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매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비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게 전가(轉嫁)하는 행위

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발주 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한 상품판매대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상품이 판매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규모유통업자의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사이버몰 입점사업자가 통신판매중개를 의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 3. (생략)</p> <p><u><신설></u></p> <p>4. ~ 10. (생략)</p> <p>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 (생략)</p> <p><u><신설></u></p>	<p>제2조(정의) ----- -----.</p> <p>1. ~ 3. (현행과 같음)</p> <p><u>3의2. “사이버몰 입점사업자”란 대규모유통업자의 사이버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그 수수료 등의 대가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자를 말한다.</u></p> <p>4. ~ 10. (현행과 같음)</p> <p>제2조의2(대규모유통업자의 의제)</p> <p>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p> <p>②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로서 직전 사업연도에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생한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p>

제3조(적용제외) ①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이하 “납품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거래

2. (생략)

② (생략)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억원 이상인 자는 “대규모유통업자”로 본다.

제3조(적용제외) ① -----

-----.

1. -----납품업자,
매장임차인 또는 사이버몰 입점사업자-----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상품판매대금의 지급) ① -

-----40일(제4호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1. ~ 3. (현행과 같음)

4.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상품 판매대금을 받아 관리하는 경우

② 대규모유통업자가 제1항의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 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 등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생략)

<신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대규모유통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 5. (생략)

② -----

-----40일(제1항제4호에 따른 상품판매대금의 경우 상품의 판매가 완료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③ (현행과 같음)

④ 대규모유통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품판매대금 및 이자의 지급기준과 지급 세부 내역을 납품업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1. ~ 5. (현행과 같음)

6. 납품업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 9. (생략)

<신설>

6. -----

-----하거나 광고
의 방법을 제한하는-----

7. ~ 9. (현행과 같음)

10.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에 대
한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사
이버몰에서 판매된 상품을
우선적으로 배송하도록 요
구하는 행위

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사이버몰에 입점하지 못하
게 하는 행위

다.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수량 또는 종류를
제한하는 행위

라. 사이버몰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목표를 제시하
고 이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불이익을 주는 행위

마. 사이버몰에서의 상품 판
매 과정에서 대규모유통업
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p>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p>	<p><u>소비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책임을 사이버몰 입점 사업자에게 전가(轉嫁)하는 행위</u></p> <p>바. <u>사이버몰 입점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 발주 기한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u></p> <p>11. -----제10호----- ----- ----- ----- -----</p>
---	--